

국가기밀 등 중요정보 보호문제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국가·사회적 법익과 상충될 경우 제한을 받는다. 이에 정보통신에 있어 지켜야 할 법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 글은 필자 소속기관과 무관한 개인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

문제 제기

최근 언론보도(동아일보, 93. 11. 19)에 의하면 「PC통신과 국가보안법」 저촉문제등이 정보통신문제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보장에 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도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함께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하여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알권리와 군사상 기밀 등 국가기밀과의 조화”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을 한바 있다. 이에 이를 소개하고 현행 법상의 관련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군사상의 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등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알권리”와 조화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판결」(1992. 2. 25 선고 89. 헌가104)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알권리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인정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달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서 가능한 것이며,…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종략」

국가·사회적 법익과 상충될 경우 알권리 제한 가능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는 매우 비중이 큰 귀중한 국민의 기

본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알권리”라 할지라도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사회적 법익과 상충 또는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즉 타인의 명예나 권리(개인적 법익),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사회적 법익),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치안질서(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호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헌법의 명문규정(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상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이하 생략」

정보통신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익

알권리 제한

정보사회에서 DB자료(데이터)의 자유로운 수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공개가 필요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수집·축적·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앞의 판례에서 밝힌 바와같이 정보공개청구권 즉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보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나 명예를 침해하거나(개인적 법익), 미풍양속, 공중도덕, 기타 사회의 건전한 윤리(사회적 법익), 국가의 안전보장, 치안질서유지 기타 국가 공공질서에 위반(국가적 법익)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자유도 무제한하게 보장할 수 없고 그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DB구축에 있어서 정보의 수집·축적·처리·전송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당해정보가 ①개인적 법익 ②사회적 법익 ③국가적 법익 중 어느 한쪽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당해 DB는 위법한 DB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보면 첫째, 「개인적 법익」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생활 비밀보호를 들 수 있다.

사생활의 비밀보장에 관해서는 헌법 제17조에 명문규정이 있고 전산망법 제25조에도 보호규정이 있다.

둘째, 「사회적 법익」을 들 수 있다.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수집과 DB구축은 위법이다. 예를 들면 음란, 외설정보, 기타 공중도덕을 해치는 정보는 적절치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정보는 형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셋째, 「국가적 법익」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분야로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정보 즉 「국가기밀」은 군사비밀·외교비밀·첨단과학·기술비밀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특수한 여건에 처해있는 경우 국가기밀의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DB회사에서는 여행·등산, 낚시 등 레저 DB를 개발하면서 강원도등 특정지역의 등산·낚시 정보와 함께 화면에 지도를 표시함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군사시설을 표시하였다고 해보자. 즉, 한탄강 상류 ××지점의 낚시터를 설명함에 있어 인근에 제○○사단 ○○탱크부대가 있고 그 탱크부대 옆에 ○○포병대대 훈련장

이 있는 중간지점이라고 구체적으로 부대명칭까지 적시하면서 지도로 표기하여 컴퓨터통신망을 이용 전국적으로 전송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정보는 군사정보로서 군사시설 작전지역의 위치등을 수집·축적·전파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밝힌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군부대의 위치나 또는 군의 작전지역을 구체적으로 부대명칭까지 밝혀서 표기하고 전파할 경우 군사기밀의 누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관계 당국에서 어떠한 사항을 군사기밀로 규정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 비밀로써 보호되어야 할 실질 가치의 유무 및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군사기밀이 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판결하여 군사기밀의 경우도 그 범위를 구체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PC통신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PC통신에 수록된 글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동아일보, 93. 11. 19)

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데이콤의 컴퓨터통신망 ‘천리안’에 사노맹(社勞盟)의 주장을 옹호하는 글이 실려 데이콤이 이 글을 삭제하고 수사당국이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상기 신문 보도내용을 발췌하면 「지난 11월 15일 현대철학동호회 회장인 김××씨(20세)가 최근에 열렸던 환경콘서트를 비난하는

글을 천리안의 「나도 한마디」란 토론장에 게재하면서 지나치게 과격하고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데이콤에서 삭제하였다. 또 현대철학동호회에 실린 글을 모니터하던 종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의 정치적 입장」, 「사노맹중앙재건위의 입장」, 「국제사회주의자의 입장」 등 4건을 수록하여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등이다.

위의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헌법21조), 통신의 자유(헌법18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앞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분명하게 밝힌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귀중한 국민의 기본권이긴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른 법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보호될 수 없다.

예컨대, 특정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인신공격성 표현(위 PC통신 내용),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등이 수록될 경우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PC통신등 정보통신매체와 공공성 확보

PC통신, 그밖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모든 DB매체들은 모두 공중정보통신으로서 공공의 성격이 있다. 개인적으로 발송되는 우편물(편지)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규제나 법적논리를 떠나서 그 이상의 사회윤리, 공중도덕 더 구체적으로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윤리」측면에서 개인의 권리, 사회의 기본질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하게 해치는 내용이 수록될 경우, 또한 수록내용을 확인한 즉시 이를 매개하는

사업자(예컨대, 데이콤 등)는 삭제하거나, 폐쇄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전기통신기본법」(91. 8. 10 법률 제4393호)의 제1조와 「전기통신사업법」의 제1조 목적규정을 보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모든 공중전기통신매체는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각항에서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라는 공익을 강조하는 규정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에서는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등은 저촉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DB사업자를 비롯한 전기통신 업무제공자는 위의 PC통신에서와 같이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인 내용에 대해 통신역무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해야 한다.(전기통신 사업법 제3조, 제153조 참조)

맺음말

지금까지 DB사업자, PC통신운영자, 기타 전기통신 업무제공자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등에 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앞으로 고도 정보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하루에도 수만건 내지는 수십만건씩 생산·전송되는 통신정보에 대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자 또는 정보제공자의 건전한 정보윤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1. 모집내용

- 정보통신분야의 각종 기술정보 및 정보화사회의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글(컬럼, 제언, 논문 등)
- 기타 「정보화사회」의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2. 분량 : 제한없음

3. 마감 : 매달 20일

4.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228 데이콤 B/D 1401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화사회」담당자앞 TEL : (02)796-6443, 6444, 6555 FAX : (02)796-6510

5. 기타

- 도착된 원고는 반환치 않으며,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를 드립니다.
- 필자의 명함판사진 1매와 약력, 전화번호, 주소, 온라인장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